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204056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20405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가합5540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 2015. 6. 17.

판결 선고 2015. 8. 2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가합554031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2012. 9.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54,751,91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154,751,9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A는 230,544,538원 및 그 중 229,094,938원에 대하여,

2)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금전 중 각 115,272,269원 및 그 중 각 114,547,469원에 대하여,

각 2013. 6. 19.부터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나.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2. 9.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54,751,91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D는 원고에게 154,751,9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다.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2013. 4.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E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3. 4. 15. 접수 제96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의 135.5/370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2013. 4.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E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3. 4. 15. 접수 제96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D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5. 18. 보증금액 225,000,000원, 보증기한 2013. 5. 16.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는 만약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3. 6. 19.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추가보증료, ③ 기타 채권의 보전 등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 제1항은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원고가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피고 회사의 신용 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에는 원고가 보증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피고 회사는 2012. 5. 1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각 상환범위를 ① 보증원금 중 1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3. 6. 19.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추가보증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금액 중 위 연대보증금액이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경영악화 및 대출금 이자의 체납

- 1) 피고 회사의 신고된 매출액은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353,628,800원,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201,888,360원,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167,570,000원, 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183,373,400원이었으나,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매출액이 86,183,000원으로 하락하였고, 2013년 1기에 신고된 매출액은 없다.
- 2) 피고 회사는 2012. 12. 31.경부터 근로소득세(갑),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체납하고, 2012. 9.경부터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 11. 5. 피고 회사의 각 보험료 체납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 3) 피고 회사는 2012. 9.경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피고 회사가 2013. 4. 15. 위 대출금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2013. 6.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 229,094,938원(원금 225,000,000원 + 이자 4,094,938원)을 지급하였고, 보증금액 225,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보증채무 이행 전날인 2013. 6. 18.까지의 추가보증료 366,160원 및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1,083,440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B의 부동산 처분행위

- 1) 피고 B은 2012. 9. 14.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인 피고 D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9. 14. 접수 제813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각 26,000,000원의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2012. 9. 14.자로 모두 말소되었다.

2) 피고 B은 2013. 4. 9. 그의 아들 피고 C의 장모인 피고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3. 4. 15. 접수 제9611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의 135.5/370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3. 4. 15. 접수 제9612호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230,544,538원(=대위변제금 229,094,938원 + 추가보증료 366,160원 + 집행보전비용 1,083,44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229,094,93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6.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14. 2. 23.까지 약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230,544,538원 중 각 115,272,269원[=약정 보증금액 112,500,000원 + 위 112,5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이자 부분 2,047,469원(=4,094,938원 × 1/2) + {(추가보증료 366,160원 + 집행보전비용 1,083,440원) × 보증채무 이행금액 중 약정 보증금액이 해당하는 비율 1/2}] 및 그 중 114,547,469원(=112,500,000원 + 2,047,469원)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14. 2. 23.까지 약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683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2013. 4. 15. 이전인 2012. 9. 14.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2012. 5. 18. 체결되어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2012. 9.경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및 기타 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3. 4. 15.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3. 6. 19.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사후구상금채권도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량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은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시가

325,000,000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 시가 8,000,000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135.5/370지분 시가 9,000,000원 상당(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342,000,000원)을 갖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52,000,000원 및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115,272,269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이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이로 인하여 피고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D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독일 업체인 아리나 에너지에 대한 250,000,000원 상당의 물품채권을 갖고 있었고, 주식회사 케이디파워와 물품구매 공급계약을 112,691,400원에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프라임에텍과 공사도급계약을 77,000,000원에 체결하는 등 피고 회사가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 및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1) 살피건대,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다438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자력 또는 변제의사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위

채권의 변제에 대한 확실성을 긍정하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 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피고 B, D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 회사의 자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 B, D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또한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처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10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 및 의사가 있었다고 믿었는지 여부는 피고 B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시기, 그로 인하여 피고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는 점, 피고 B과 피고 D의 관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1, 2순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6.경 위 부동산의 시가가 33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도 위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278,000,000원(=330,000,000원 - 52,000,000원)이 된다.

3)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115,272,269원 및 그 중 114,547,469원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4. 2. 23.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6. 17.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9,479,647원{=9,414,860원(=114,547,469원 × 12% × 250/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0,064,787원(=114,547,469원 × 20% × 479/365)}을 합한 154,751,916원(=115,272,269원 + 39,479,647원)이 된다.

4) 따라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154,751,9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54,751,91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피고 B과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2013. 4. 15.로부터 6일

전인 2013. 4. 9.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2012. 5. 1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2012. 9.경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 이자 및 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6일 후인 2013. 4. 15.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2013. 6. 19.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사후구상금채권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15,272,269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피고 B 지분 상당의 시가 8,000,000원과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의 피고 B 지분 상당의 시가 9,000,000원의 합계 17,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B이 2013. 4. 9. 당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을 피고 E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E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E가 피고 B, C와 사돈 내지는 친족 관계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이전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40,000,000원, 피고 B에게 50,000,000원 등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별지 목록 2 및 3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은 위 대여금채권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 그러나 피고 E가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12,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가 피고 회사에게 그 주장하는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사 피고 E가 위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E는 그 원물반환으로서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3. 4. 15. 접수 제96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의 135.5/370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3. 4. 15. 접수 제96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 포함)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일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현주

판사장윤석

판사조진구

별지

1) 피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B이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아리나 에너지에 대한 물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양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된 이후 당심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E가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수차에 걸쳐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된 이후 당심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